소통하는 의정

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5일

3. 제안이유

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·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도민이 안심 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 -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 피보험자가 됨
- 나. 보조금의 지원 등 (안 제4조)
 -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보조
- 다. 도민안전보험계약의 체결 등 (안 제5조)
 - 시장·군수가 보험기관과 보험계약 체결, 시군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결정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.
-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3조는 「주민등록법」상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보험의 가입대상으로 정하여 충북도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는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시·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 도민안전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안전보험 추진과 관련해 시장·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예고('18. 9. 28.~'18. 10. 1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충청북도지사가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를 조례의 상위법령이나 위임된 근거로 명시한 사유
- 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을 가입대상으로 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
- 괴산, 단양, 영동군은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관련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한 중복수혜의 문제점
- 인천시의 경우 보험금의 보상범위, 보상한도액, 산정, 청구, 지급, 지급제외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제출된 조례안은 보험가입을 하는데 있어 예산 지원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는 사유

- 우리와 가까운 충남은 도비와 시군비 분담률을 50:50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는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을 35:65로 정하고 있어 시·군에만 부담을 주는 조례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
- 매년 같은 예산의 보험료를 추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
- 마지막으로 보험사 선정, 보장항목 그리고 보상범위와 한도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